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(2단계)[장기1차]〕

□ 점검일시 : 2020.02.21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최영준

<table>
<tr>
<td>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 A 가설통로구간은 재설치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하부 구간에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 및 통제가 미흡하여 근로자 이동간 추락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관련규정에 맞도록 복구 조치하기바람.
- 또한, 작업발판 설치구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치의 훅해지장치가 훼손되어 있으니 확인을 실시하고 보완하여 사용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td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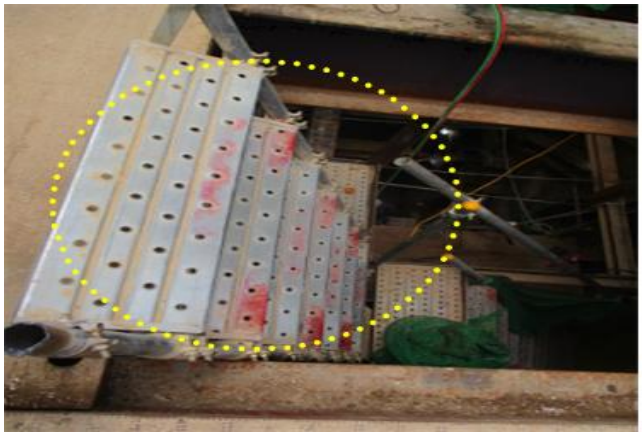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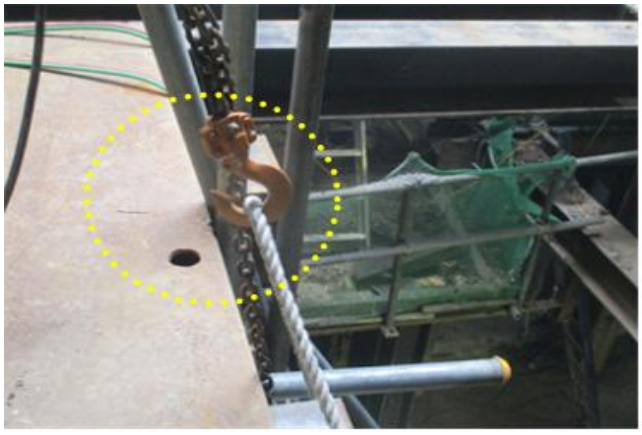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tr>
<td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보수보강공사 구간 상부 낙하물 방지망이 일부 훼손된 구간이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 (중구청 도로시설물 자재창고 주변)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td>
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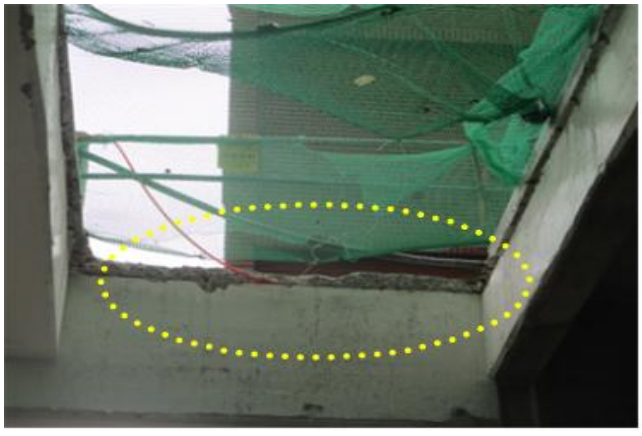 </td>
</tr>
</table>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연결통로 작업구간 핸드그라인더 절단작업 및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비산으로 화재발생 및 하부 근로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작업장 주변에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작업 후 확인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 - 또한 용접작업자는 보안경, 보안면, 절연장갑 등 용접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확인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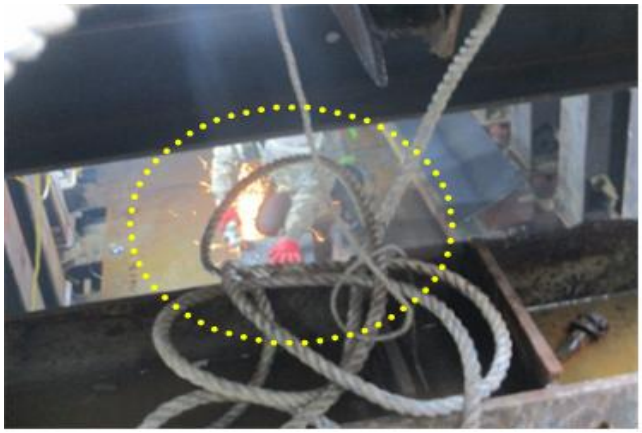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연결통로 A 구간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은 미접지 상태로 근로자 감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즉시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.
 - 또한, 충전부 커버 조치 및 잠금장치를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(전기 기계/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),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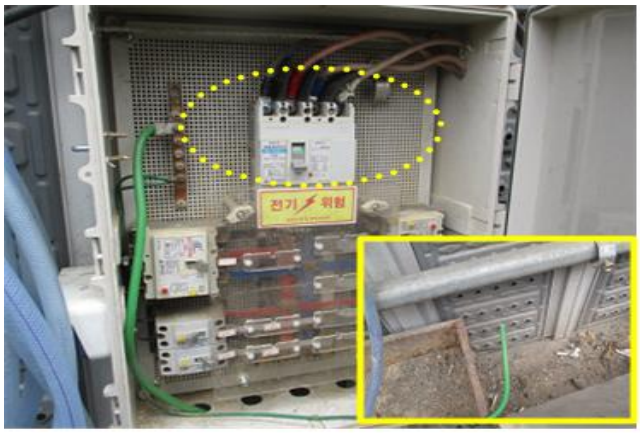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 A 상부에 작업중인 카고크레인의 하부 아웃트리거는 최대한 인출한 후 작업하기 바라며, 하부 받침상태가 좌우 상이하여 전도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보완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기 바람.
 - 또한, 크레인 하부 누유로 보이는 흔적이 있으니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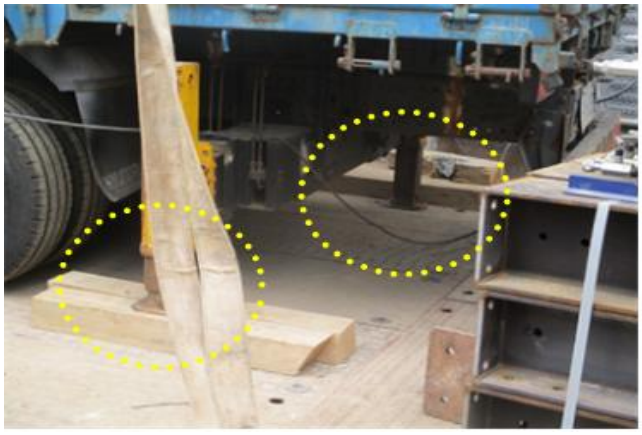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등),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

- 협력업체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으니 출입을 통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진양상가, 인양상가변 작업구간에는 산소용기 및 가스용기가 작업장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,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위험물보관소에 별도 이동보관하거나, 현장에서 반출하기 바람.
 - 또한, 위험물보관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(가스등의 용기),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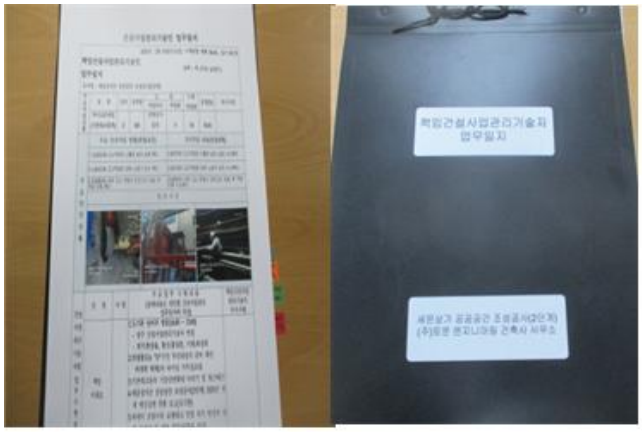
○ 기타 안전관리(건축부) -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일일현장 안전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, 활동사항을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.